DMC가재울4구역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주택의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은 물론 이와 인접한 수도권(인천, 경기)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함.(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85㎡이하는 5년간, 85㎡초과는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9.25)에 의거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함(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 본 아파트는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5197호 (2013. 6. 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함.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층 61개동 4,300세대(조합 공급분 2,000세대, 임대 750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550세대[일반특별공급 113세대, 다자녀특별공급 15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45세대]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1단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영주택	2013000616-01	84.974C	48	84.974	26.440	111.414	53.726	165.140	44.938	2
	2013000616-02	84.980D	67	84.980	27.634	112.614	53.730	166.344	45.266	3
	2013000616-03	84.968E	165	84.968	26.694	111.662	53.722	165.384	45.005	4
	2013000616-04	84.971F	258	84.971	27.009	111.980	53.724	165.704	45.092	18
	2013000616-05	120.492A	129	120.492	33.420	153.912	76.183	230.095	62.614	–
	2013000616-06	120.006B	42	120.006	32.931	152.937	75.876	228.813	62.266	–
	2013000616-07	121.614	129	121.614	36.233	157.847	76.893	234.740	63.879	–
	2013000616-08	152.146	56	152.146	42.204	194.350	96.198	290.548	79.065	–
	2013000616-09	175.078	44	175.078	33.818	208.896	110.696	319.592	86.969	–

◈ 2단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영주택	2013000617-01	84.909A	59	84.909	25.184	110.093	66.409	176.502	49.628	5
	2013000617-02	84.990B	59	84.990	25.150	110.140	66.473	176.613	49.659	5
	2013000617-03	84.968E	256	84.968	25.332	110.300	66.455	176.755	49.699	24

◈ 3단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영주택	2013000618-01	59.981D	50	59.981	22.582	82.563	45.994	128.557	43.634	5
	2013000618-02	84.909A	35	84.909	25.729	110.638	65.108	175.746	59.651	2
	2013000618-03	84.990B	38	84.990	25.695	110.685	65.171	175.856	59.689	2
	2013000618-04	84.968E	61	84.968	27.440	112.408	65.154	177.562	60.268	–

◈ 4단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영주택	2013000619-01	84.968E	54	84.968	27.652	112.620	74.093	186.713	76.266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1단지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라인	가격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건축비	대지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3.08.12	1차(10%) 2013.09.10	2차 (10%) 2013.10.10	3차 (10%) 2014.03.10	4차 (10%) 2014.07.10	5차 (10%) 2014.12.10	6차 (10%) 2015.05.11	
84.974C	48	111동 1호,4호 113동 1호,4호 117동 5호 / 123동 5호	최고가	229,436,000	330,164,000	559,600,000	10,000,000	4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167,880,000
			평균가	219,507,167	315,876,166	535,383,333	10,000,000	43,538,333	53,538,333	53,538,333	53,538,333	53,538,333	53,538,333	53,538,333	160,615,002
			최저가	209,182,000	301,018,000	510,200,000	10,000,000	4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53,060,000
84.980D	67	111동 2,3호 113동 2,3호 117동 3,4호 / 123동 3,4호	최고가	230,133,000	331,167,000	561,300,000	10,000,000	4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168,390,000
			평균가	219,800,388	316,298,119	536,098,507	10,000,000	43,609,850	53,609,850	53,609,850	53,609,850	53,609,850	53,609,850	53,609,850	160,829,557
			최저가	209,838,000	301,962,000	511,800,000	10,000,000	41,180,000	51,180,000	51,180,000	51,180,000	51,180,000	51,180,000	51,180,000	153,540,000
84.968E	165	107동 1,2,3,4호 / 108동 1,2,3,4호 109동 1,2,3,4호 110동 1,2,3,4호/ 127동 1,2,3,4호	최고가	229,682,000	330,518,000	560,200,000	10,000,000	4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168,060,000
			평균가	219,555,994	315,946,430	535,502,424	10,000,000	43,550,242	53,550,242	53,550,242	53,550,242	53,550,242	53,550,242	53,550,242	160,650,730
			최저가	209,428,000	301,372,000	510,800,000	10,000,000	4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51,080,000	153,240,000
84.971F	258	112동 1,2,3,4호 / 115동 / 116동/ 117동 120동/ 121동/ 122동 / 123동/ 124동/ 128동1,2호 129동 1,2,3,4호 / 130동 1,2,3,4호	최고가	232,142,000	334,058,000	566,200,000	10,000,000	4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169,860,000
			평균가	219,447,573	315,790,411	535,237,984	10,000,000	43,523,798	53,523,798	53,523,798	53,523,798	53,523,798	53,523,798	53,523,798	160,571,398
			최저가	209,633,000	301,667,000	511,300,000	10,000,000	4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51,130,000	153,390,000
120.492A	129	118동 5호 / 119동 1,4호 124동 5호 125동 1,4호	최고가	322,831,731	423,268,269	746,100,000	10,000,000	64,610,000	74,610,000	74,610,000	74,610,000	74,610,000	74,610,000	74,610,000	223,830,000
			평균가	306,003,690	401,204,837	707,208,527	10,000,000	60,720,852	70,720,852	70,720,852	70,720,852	70,720,852	70,720,852	70,720,852	212,162,563
			최저가	288,908,654	378,791,346	667,700,000	10,000,000	5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120.006B	42	118동 1,2호	최고가	321,187,500	421,112,500	742,300,000	10,000,000	6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222,690,000
			평균가	305,064,560	399,973,535	705,038,095	10,000,000	60,503,809	70,503,809	70,503,809	70,503,809	70,503,809	70,503,809	70,503,809	211,511,432
			최저가	288,908,654	378,791,346	667,700,000	10,000,000	5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121.614	129	118동 3,4호 119동 2,3호 124동 3,4호	최고가	329,408,654	431,891,346	761,300,000	10,000,000	66,130,000	76,130,000	76,130,000	76,130,000	76,130,000	76,130,000	76,130,000	228,390,000
			평균가	311,714,558	408,692,419	720,406,977	10,000,000	62,040,697	72,040,697	72,040,697	72,040,697	72,040,697	72,040,697	72,040,697	216,122,098
			최저가	294,836,538	386,563,462	681,400,000	10,000,000	58,140,000	68,140,000	68,140,000	68,140,000	68,140,000	68,140,000	68,140,000	204,420,000
152.146	56	125동 2,3호	최고가	398,725,962	522,774,038	921,500,000	10,000,000	82,150,000	92,150,000	92,150,000	92,150,000	92,150,000	92,150,000	92,150,000	276,450,000
			평균가	376,399,038	493,500,962	869,900,000	10,000,000	7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260,970,000
			최저가	354,072,115	464,227,885	818,300,000	10,000,000	71,830,000	81,830,000	81,830,000	81,830,000	81,830,000	81,830,000	81,830,000	245,490,000
175.078	44	126동 1,2호	최고가	423,605,769	555,394,231	979,000,000	10,000,000	8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97,900,000	293,700,000
			평균가	400,308,238	524,848,580	925,156,818	10,000,000	82,515,681	92,515,681	92,515,681	92,515,681	92,515,681	92,515,681	92,515,681	277,547,051
			최저가	377,004,808	494,295,192	871,300,000	10,000,000	7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87,130,000	261,390,000

◈ 2단지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라인	가격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건축비	대지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3.08.12	1차(10%) 2013.09.10	2차 (10%) 2013.10.10	3차 (10%) 2014.03.10	4차 (10%) 2014.07.10	5차 (10%) 2014.12.10	6차 (10%) 2015.05.11	
84.909A	59	218동 1,4호 219동 1,4호 220동 1,4호	최고가	230,092,000	331,108,000	561,200,000	10,000,000	4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168,360,000
			평균가	218,115,136	313,873,000	531,988,136	10,000,000	43,198,813	53,198,813	53,198,813	53,198,813	53,198,813	53,198,813	53,198,813	159,596,445
			최저가	207,747,000	298,953,000	506,700,000	10,000,000	4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152,010,000
84.990B	59	218동 2,3호 219동 2,3호 220동 2,3호	최고가	230,297,000	331,403,000	561,700,000	10,000,000	4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56,170,000	168,510,000
			평균가	218,329,864	314,182,000	532,511,864	10,000,000	43,251,186	53,251,186	53,251,186	53,251,186	53,251,186	53,251,186	53,251,186	159,753,562
			최저가	207,952,000	299,248,000	507,200,000	10,000,000	40,720,000	50,720,000	50,720,000	50,720,000	50,720,000	50,720,000	50,720,000	152,160,000
84.968E	256	209동 1,2호 / 210동 1,2호 / 211동 1,2호 212동1,2,3,4호/ 213동 1,2호/ 214동 1,2,3,4호 215동 1,2,3,4호 / 216동1,2,3,4호 / 217동 1,2,3,4호	최고가	228,534,000	328,866,000	557,400,000	10,000,000	4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167,220,000
			평균가	217,993,797	313,698,391	531,692,188	10,000,000	43,169,218	53,169,218	53,169,218	53,169,218	53,169,218	53,169,218	53,169,218	159,507,662
			최저가	208,362,000	299,838,000	508,200,000	10,000,000	4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152,460,000

◈ 3단지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라인	가격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건축비	대지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3.08.12	1차(10%) 2013.09.10	2차 (10%) 2013.10.10	3차 (10%) 2014.03.10	4차 (10%) 2014.07.10	5차 (10%) 2014.12.10	6차 (10%) 2015.05.11	
59.981D	50	303동 1,2,3,4호 304동 1,2호 305동 1,2,3,4호	최고가	172,241,000	247,859,000	420,100,000	10,000,000	3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26,030,000
			평균가	166,661,720	239,830,280	406,492,000	10,000,000	30,649,200	40,649,200	40,649,200	40,649,200	40,649,200	40,649,200	40,649,200	121,947,600
			최저가	161,909,000	232,991,000	394,900,000	10,000,000	2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84.909A	35	301동 1,4호	최고가	221,113,000	318,187,000	539,300,000	10,000,000	4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161,790,000
			평균가	210,297,200	302,622,800	512,920,000	10,000,000	41,292,000	51,292,000	51,292,000	51,292,000	51,292,000	51,292,000	51,292,000	153,876,000
			최저가	200,121,000	287,979,000	488,100,000	10,000,000	3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146,430,000
84.990B	38	301동 2,3호	최고가	221,359,000	318,541,000	539,900,000	10,000,000	43,990,000	53,990,000	53,990,000	53,990,000	53,990,000	53,990,000	53,990,000	161,970,000
			평균가	211,279,473	304,036,316	515,315,789	10,000,000	41,531,578	51,531,578	51,531,578	51,531,578	51,531,578	51,531,578	51,531,578	154,594,743
			최저가	200,326,000	288,274,000	488,600,000	10,000,000	3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48,860,000	146,580,000
84.968E	61	302동 1,2,3,4호	최고가	221,810,000	319,190,0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평균가	211,976,721	305,039,672	517,016,393	10,000,000	41,701,639	51,701,639	51,701,639	51,701,639	51,701,639	51,701,639	51,701,639	155,104,920
			최저가	201,843,000	290,457,000	492,300,000	10,000,000	3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147,690,000

◈ 4단지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라인	가격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건축비	대지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3.08.12	1차(10%) 2013.09.10	2차 (10%) 2013.10.10	3차 (10%) 2014.03.10	4차 (10%) 2014.07.10	5차 (10%) 2014.12.10	6차 (10%) 2015.05.11	
84.968E	54	401동 1,2,3,4호 402동 1,2호	최고가	227,386,000	327,214,000	554,600,000	10,000,000	4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166,380,000
			평균가	218,378,148	314,251,482	532,629,630	10,000,000	43,262,963	53,262,963	53,262,963	53,262,963	53,262,963	53,262,963	53,262,963	159,788,889
			최저가	209,551,000	301,549,000	511,100,000	10,000,000	4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51,110,000	153,330,000

■ 공통사항

• 당 아파트는 2007년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 적용됨.(단, 2013년 5월 3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의 전용 85㎡ 초과분에 한해 청약가점제 적용 폐지) • 상기 분양주택의 가격은 단지별,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적용 하였으며 최고가와 평균가, 최저가만을 표시하였으니, 세대별 분양가격은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3 의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6. 2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총 70세대)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 품목이 미포함 되어있고, 별도계약 품목 금액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전산검색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단,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단지별,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아파트의 분양중도금은 당 시행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청약시 유의 사항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1) 공통사항 • 신청 일시 및 장소

구 분	신 청 일 시	신 청 장 소	입주자 선정일시
일반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13. 7. 2(화) 10:00 ~ 14:00	DMC가재울4구역 견본주택 (신청자가 견본주택 방문신청)	• 일시 : 2013. 7. 2(화) 16:00 • 장소 : DMC가재울4구역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 현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시행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함.(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매월적립하여 납입인정된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그 외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하여 납입인정된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113세대 공급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공 통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세대주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는 무주택서약서로 접수후 계약시 구비) • 일반 특별공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발급)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은 해당지자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청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제3자 대리신청시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인장

3)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비율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급하되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공급세대 :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151세대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되며, 입양자녀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를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채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이상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표에서 같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5):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입주자 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 분은 무효처리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공 통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시 구비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는 무주택서약서로 접수후 계약시 구비)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주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인장

4)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1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단,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전년도(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92,364원 이하	5,017,805원 이하	5,268,647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390,836원 이하	6,021,366원 이하	6,322,376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268,647원)+1인당 평균소득(388,142원)*(N–5) *N→6인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 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 제1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수가 많은 자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모두 자녀수로 인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 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는 무주택서약서로 접수후 계약시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가입 순위 확인서(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발급) •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주민등록등본(단,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임신중인자, 접수장소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접수장소 비치)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추가 제출) • 소득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추가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당해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비치)	* 접수장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1통			
제3자 대리신청시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인장			

5)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공급 세대 : 주택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45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 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가점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식에 의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공 통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는 무주택서약서로 접수후 계약시 구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시 구비)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6)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합계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84.974C	84.980D	84.971F	84.968E	120.492A	120.006B	121.614	152.146	175.078	소계	84.909A	84.990B	84.968E	소계	59.981D	84.909A	84.990B	84.968E	소계	84.968E	소계	
일반 특별공급		4	6	26	17						53	6	5	26	37	5	3	4	6	18	5	5	113
다자녀 특별공급	서울	2	3	13	8	7	2	7	2	2	46	3	3	12	18	2	2	2	3	9	3	3	76
	경기 및 인천	2	3	13	8	7	2	7	2	2	46	3	3	12	18	2	2	2	3	9	2	2	75
	소 계	4	6	26	16	14	4	14	4	4	92	6	6	24	36	4	4	4	6	18	5	5	151
신혼부부 특별공급		4	6	26	17						53	6	6	25	37	5	3	4	6	18	5	5	1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8	5	4	1	4	2	1	28	2	2	7	11	1	1	1	2	5	1	1	45
합 계		13	20	86	55	18	5	18	6	5	226	20	19	82	121	15	11	13	20	59	16	16	422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DMC가재울4구역 견본주택 방문 신청

2. 일반공급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지역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지역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 • 본 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전산검색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단,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지역내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지역 기준 주택형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청약 가능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 이하 : 가점제 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2013. 7. 3(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3. 7. 10(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대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85㎡초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공통	85㎡이하 : 가점제 적용 / 85㎡초과 : 추첨제 적용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85㎡초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2013. 7. 4(목)	• 3순위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외 인터넷 뱅킹가입자 :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가입자 : www.kbstar.com • 3순위 인터넷 접수시간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00 ~ 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만 가능하고, 3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2㎡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서울특별시 예치금액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인천광역시 예치금액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경기도 예치금액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음.

3)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2007.9.1일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2013.5.3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는 전용 85㎡ 초과분에 한해서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점수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4)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 항목	가점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점	84					
비 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제3항 제12조 제3항 • 제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제1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5) 감점 산정 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 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한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6)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7)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 함.

7)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 마다 5점씩 감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 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 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 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 됨.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신청 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주택규모로 변경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 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주택은 포함)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5.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청약신청 접수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당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지별,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85㎡ 이하 주택형은 전원 가점제로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함[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85㎡ 초과 주택형은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 시행자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3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인터넷청약→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절차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노약자 및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또는 배우자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3순위 : 거래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대상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 : 거래은행 본인계좌에서 자동인출(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은행창구 청약시 :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인터넷 청약시 환불기간 및 방법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3. 7. 11)이후에 자동 환불됨. • 은행창구 청약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환불됨. • 거래은행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

대 상	환불 기간	환불 장소	구비 서류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3.7.11(목) 이후 (토요일, 공휴일 환불 불가) 평일 09:00~16:00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터넷 청약신청자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3.7.11(목)이후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첨자에 대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자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공 통 (특별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 2순위 중 85㎡이하 주택형은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형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1)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가점제 적용 입주자선정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2) 85㎡ 초과 : 청약자 모두 추첨제로 청약하고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모델하우스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일정등은 별도 통보함.
• 동,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3. 7. 10 ~ 2013. 7. 19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코드: 9 → 1 → 3)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13. 7. 10 ~ 2013. 7. 19 (10일간)	
휴대폰 (SMS)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당첨통지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 일시	2013. 7. 10 (10:00) (※ 제공시각은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약 기간	접수 시간	계약장소	계약금 납부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2013년 7월 15, 16, 17일 (3일간)	10:00 ~ 16:00	DMC가재울 4구역 견본주택	국민은행 591501–04–035587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3인
			기업은행 045–081435–01–018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3명

※ 계약금1차 금액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시 납부[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가능하며, 상기 계좌 중 1곳으로 무통장입금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람.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 중 1곳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입금시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 요망 [계약자 동 · 호수 8자리 기재, 예) 101동101호의 경우 : 01010101]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계약금(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 입금증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청약 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계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 필요시) – 혼인관계증명서 1통(이혼자 및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재산세 과세증명원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3. 6. 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점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로 관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도 소명하지 못할 경우(당첨취소와 함께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 당첨자중 당사가 지정한 기간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음(단,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 청약 및 당첨이 불가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 안내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시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고지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은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자 : 2015. 10월(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금액(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공급금액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지정일)	확장부위	주택형 (㎡)	공급금액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지정일)	확장부위
59.981D	11,000,000	1,000,000	10,000,000	주방, 거실, 침실1, 침실3	84.971F	13,400,000	1,000,000	12,4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84.909A	13,400,000	1,000,000	12,400,000	주방, 거실, 침실1, 침실3	120.492A	17,000,000	1,000,000	16,0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84.990B	10,900,000	1,000,000	9,900,000	주방, 거실, 침실3	120.006B	16,600,000	1,000,000	15,6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84.974C	12,700,000	1,000,000	11,7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121.614	16,600,000	1,000,000	15,6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84.980D	12,700,000	1,000,000	11,7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152.146	17,300,000	1,000,000	16,3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서재
84.968E	13,400,000	1,000,000	12,4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175.078	18,800,000	1,000,000	17,800,000	주방,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 견본주택은 상기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 및 시공되었으며, 별도품목 내역은 견본주택 및 안내문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세대별 발코니의 면적과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으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일정 별도통지 예정)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와 계약조건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단, 사용검사 및 잔금 납부이후 설치 가능)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 ·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입주자들이 개별 공사시 소음, 누수 등 민원피해가 우려되어 공사과정에서 일괄 시공함을 권장함. • 발코니 확장선택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을 포함하여 내부,외부 새시는 시공여건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13–101–0002500호	₩ 635,837,3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3.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 축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0,69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 기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1,332,103,187원	부가가치세 포함
소 방 · 통 신	유원ENF(주)	823,900,000원	

■ 유의사항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함.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 사업제안서 등이 상이할 경우 본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계약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오차가 생길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이 다소 차이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 등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등)와 견본주택 전시모형(건축물, 조경,시설물,단위세대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승인도서 또는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창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쓰레기투입구, 주차램프지붕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위치 및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쓰레기투입구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람. •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현재 인 · 허가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됨. • 단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학교 등)는 인 · 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역은 내부순환 도로 및 철도 등 주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바람. 주차장은 동별로 이용 가능한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투입구 등의 동별 설치개소와 이용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주택은 공동주택 통합 경비시스템(용역경비)이 적용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매월 입주자 관리비에 합산되어 부과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도에 표현된 공원 및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기관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에는 소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상에 전주 및 전선이 이동설치 되므로 미관 및 기타피해가 생길 수 있음.
•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1층 세대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 등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세대 및 세대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와 구분설치 또는 구분표시 예정이나, 공동주택 주차장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쿨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가스배관(미터기 포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1단지~5단지로 구성되며,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며 단지별로 입주 후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커뮤니티센터는 1단지와 2단지에 설치되며, 3,4,5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계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커뮤니티센터에는 골프연습장 및 헬스시설 등이 설치되며, 소음의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수 있음. • 114동 동측, 216동과 217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노인정이 위치하여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 101, 102, 106동 / 107, 108동 / 119, 120, 125, 126동 / 220, 221, 216, 217동 / 212, 213, 215동 / 304동 / 305동 인근에 주민을 위한 텃밭이 설치되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4동 상부에 단지 공용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집전판이 설치됨. • 101, 110동 인근에 스쿨버스존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외장부 벽, 천정, 바닥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한 요철부로 인해, 확장형과 확장변화형의 각 실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변화에 따라 발코니 출입문 폭이 협소한 타입이 생기며, 출입 용이를 위하여 안방 분합창 하부턱이 없는 타입이 있음. • 101, 102, 103, 104, 105동, 201, 202, 203, 204, 205, 221동, 217동 북측, 403, 404동, 501동 하부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해 해당동 및 인접동은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산책로,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되며, 일부 세대의 경우 별도 대피공간이 없으므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여야 함.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발생됨.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9동과 125동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됨.
• 도로 가각정리 및 경관녹지 변경에 따라 대지면적이 다소 차이날 수 있음. • 5단지와 래미안2차APT 사이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음. • 주택단지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저층 석재색상,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 여건 등이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일반분양 확정시에 중도금, 잔금, 선납할인료, 입주예정일 등은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세대와 일반분양 세대간 마감재 및 품질의 차이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 :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274171–0006578)
• 시공업체 :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694), 에스케이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38805), 현대산업개발(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279433)

총 4300세대(일반분양 1,550세대)

분양문의 02)303–811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1번지 DMC가재울4구역 분양사무소 (02–303–811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DMC가재울4구역 분양사무소 및 사업주체(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